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 튼튼한 국가안보!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약의뢰 시 유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 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및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다. 구매조달처-2320호(2017. 7.24) :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 집행기준 시행 알림
- 라. 구매조달처-2671호(2017. 8. 1) :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처리 기준』 시행
- 마. 구매조달처-2827호(2017. 8. 3) :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알림

2. 최근 지출, 수입사업 관련 계약의뢰 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사업의 설계 및 추진 시 긴급성, 경제성,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입찰시비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추진에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 추진

- 1)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입찰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함.
-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및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 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에 따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통하여 입찰공고하고 낙찰자 결정을 하여야 하나 현재 온비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2단계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아 입찰진행이 불가능함.

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하고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동일한 계약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 추진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음년도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부적정한 계약임.

다. 계약 목적물별 분류(공사, 물품)를 잘못 적용하여 추진

- 설치공사비용과 제조비용을 비교하여 50%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으로 추진

- 붙 임
- 1.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문서(협상계약 추진) 1부
 - 2. 연장계약 추진 서울시 감사지적 사례 및 유권해석 1식
 - 3. 계약 목적물별 분류 관련 유권해석 1식. 끝.

서울교통공사사장



수신자 가1~가51,나1-2, 다1, 마27, 아1-3,나1-아19,나1-아19,자1-자5

부장 양영환

팀장 정운암

처장 08/16
김영길

협조자

시행 구매조달처-3314 (2017.08.16.)

접수 구매조달처-3540 (2017.08.21.)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http://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234 전송 6311-4371 / 1961542@smrt.co.kr / 대시민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